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90

발의연월일: 2022. 6. 16.

발 의 자:정우택・태영호・정경희

백종헌 • 조해진 • 서병수

김예지 • 이종성 • 지성호

이채익 · 조명희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천억원 이하	100분의 20)
3천억원 초과	599억5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
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u>세율</u>
2억원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u>이하</u>	<u></u>
<u> 2억원</u>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u> 초과</u>	금액의
200억원	<u> </u>
이하	<u>100분 기 20)</u>
200억원	
<u> 초과</u>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u> 3천억원</u>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u>이하</u>	
3천억원	<u>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u>
<u> 초과</u>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55조(세율) ①

안

개

정

과세표준	세율
<u>5억원</u> <u>이하</u>	<u>과세표준의 100분의 10</u>
<u>5억원</u> <u>초과</u> <u>3천억원</u> <u>이하</u>	<u>5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u> <u>금액의</u> <u>100분의 20)</u>
<u>3천억원</u> <u>초과</u>	599억5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